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이덕난, 유지연

- 01 I. 들어가며
- 02 II. 가해학생 분리 관련 법령
- 07 III. 학교폭력 및 법적 쟁송 현황
- 13 IV.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17 V. 가해학생 분리 등의 개선과제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가해학생의 집행 지연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않고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피해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인용률은 2022년에 각각 11.7%와 4.9%로 매우 낮았으나, 집행정지 인용률은 각각 52.4%와 60.0%로 매우 높았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등의 주요 쟁점으로는 ① 법적 쟁송 남발과 장기화로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가해학생 분리 집행 지연, ②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완화 및 실효성 약화, ③ 출석정지·학급교체 및 교내·사회봉사 등의 분리·반성 효과 미흡 등이 제기됨

□ 가해학생 분리조치 및 이행 지연의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행정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여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을 단축하고, 법적 쟁송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적극 청취(서면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학생부 기재 기간을 확대하고, 소송 종결 후에도 대학입시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간끌기’를 위해 법적 쟁송 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 들어가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스포츠 및 방송·연예계, 정치권 등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삶과 학습 등에서 고통받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부터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적 이슈가 되었던 한 사건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모 고등학교에서 약 1년 동안 동료 가해학생들로부터 욕설과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학교에 접수(2018.3.7.)되었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대법원 결정 직전까지 약 1년 동안 타 시·도로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전학(이하 “강제전학”이라 함. 2019.2.19.)을 가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피해학생의 공식적인 신고 접수 이전까지 약 1년 동안의 학생 보호 및 상담, 신고 이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분리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가해학생 전학 처분 이후의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 중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전학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거나 해당 기간 중에 추가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의 처분에 대해 거부하며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에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 등에 허점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보호·회복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조치 중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 다른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 매우 중한 조치인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제대로 분리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학생의 신고 및 보호, 회복 조치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 조치와 가해학생 반성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중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학생 분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학교폭력 현황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적 쟁송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해학생 분리 및 이행 지연의 쟁점 및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가해학생 분리 관련 법령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및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이는 협박 또는 보복 행위 금지 위반 시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6항). 다만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 부과 조치할 수 있고, 학교장이 선 조치 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4항). 이에 따라 '학급교체' 등은 학교장의 긴급 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긴급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7항). 또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학생 분리 조치

앞에서 설명한 9가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가운데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일정기간 이상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강제전학과 퇴학이다. 그러나 강제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처분받은 가해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피해학생의 삶과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출석정지는 단기간의 일회성 조치이며, 이에 따라 신고 접수 후 학교장 긴급 조치로 내려질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종료될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이후 교육장의 처분까지 14일 이내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출석정지만으로 가해학생 분리는 어렵다. 또한 학급교체는 수업 시간 중에 분리되는 효과는 있으나, 동일 학교 및 학년 내에서 학급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완전한 분리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성격상 피해학생으로부터의 분리 조치로 볼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의 접근 금지와는 달라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대면하거나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분리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실시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법 제17조 제8항), 실제로 등교와 병행하거나 일정시간 이수 후 학교로 복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시키기는 쉽지 않다.

3. 가해학생 강제전학 및 퇴학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조치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 때 교육장 및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

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피해학생과 동일한 생활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학교로 전학시키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이사를 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퇴학’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가해학생을 학교 내에서 선도·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게 되는 처분이다. 다만의 무교육과정(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퇴학학생의 재입학 등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제1항은 “교육감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4.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은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모든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이에 비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2항).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2019년 8월 20일에 개정되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 전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동법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제30조(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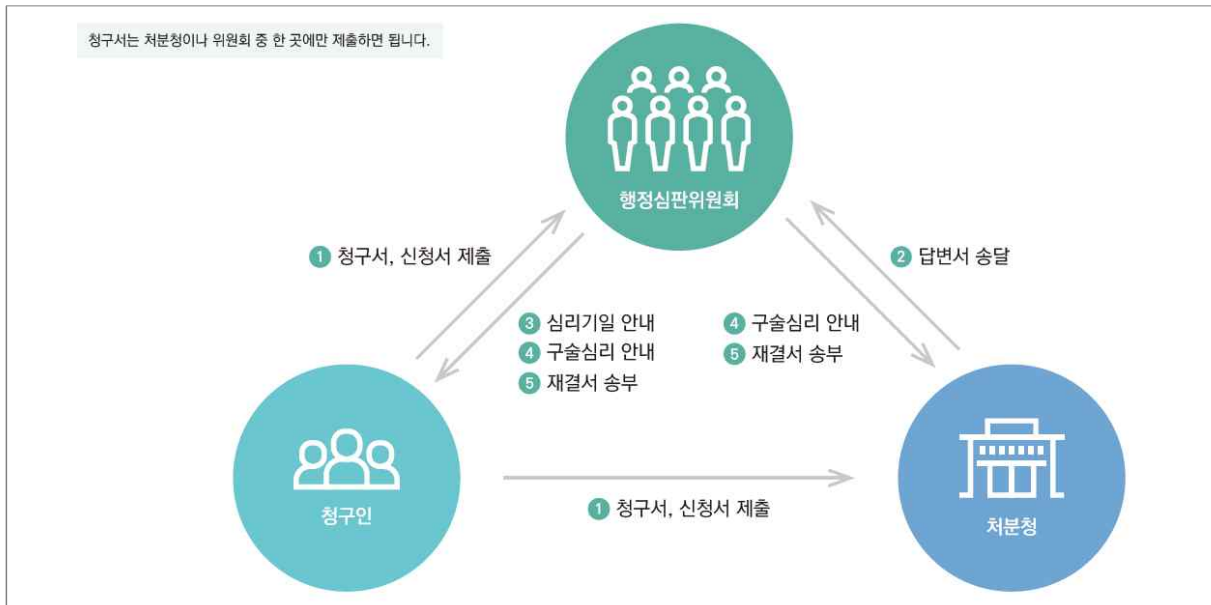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에 따른 행정심판은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²⁾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2)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3.1., p.88

| 그림 1 | 행정심판의 절차



※ 자료: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3.1., p.87

Ⅲ. 학교폭력 및 법적 쟁송 현황

1. 학교폭력 현황

가. 학년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2020학년도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심의기구가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020학년도는 코로나19가 시작되어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시기였기에 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초·중·고교 합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8학년도에 32,632건, 2019학년도에 31,130건이었다. 코로나19 발생 및 교육지원청으로의 심의위원회 이관이 이루어진 2020학년도에는 6,842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1학년도에 11,81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9,796건으로 전년도 1학기에 비해 증가 추세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2018학년도에 39,478명, 2019학년도에 40,411명이었다. 코로나19 발생 및 교육지원청으로의 심의위원회 이관이 이루어진 2020학년도에는 크게 13,425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학년도에 20,68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14,037명으로 전년도 1학기에 비해 증가 추세이다.

| 표 1 | 학년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단위: 건, 명)

기간	학교급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2018학년도 (2018.3.1.~ 2019.2.28.)	초	6,327	7,020	5,965
	중	16,736	22,562	24,180
	고	9,252	9,613	10,641
	기타	317	283	213
	총계	32,632	39,478	40,999
2019학년도 (2019.3.1.~ 2020.2.29.)	초	6,927	9,317	8,281
	중	15,613	21,039	22,794
	고	8,364	9,809	9,922
	기타	226	246	186
	총계	31,130	40,411	41,183
2020학년도 (2020.3.1.~ 2021.2.28.)	초	1,452	2,682	2,646
	중	4,145	6,986	8,356
	고	2,697	3,675	5,057
	기타	63	82	70
	총계	8,357	13,425	16,129
2021학년도 (2021.3.1.~ 2022.2.28.)	초	3,757	4,754	5,504
	중	7,665	10,535	13,812
	고	4,150	5,304	6,972
	기타	81	89	111
	총계	15,653	20,682	26,399
2022학년도 1학기 (2022.3.1.~ 2022.8.31.)	초	2,422	3,357	3,887
	중	5,000	7,448	9,427
	고	2,344	3,192	4,054
	기타	30	40	39
	총계	9,796	14,037	17,407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

나. 학년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1명의 피해학생에게 2개 이상의 보호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심리상담·조언이 12,2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요양 2,951건, 기타 1,814건, 일시보호 806건, 학급교체 120건으로 나타났다.

| 표 2 | 학년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단위: 건)

기간	학교급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기타
2018학년도 (2018.3.1.~ 2019.2.28.)	초	3,146	271	385	38	276
	중	13,411	1,128	1,971	121	1,180
	고	5,083	668	1,018	71	528
	기타	171	55	15	7	33
	총계	21,811	2,122	3,389	237	2,017
2019학년도 (2019.3.1.~ 2020.2.29.)	초	3,862	391	639	59	1,041
	중	11,922	1,214	2,327	105	1,555
	고	4,793	828	1,168	146	745
	기타	142	27	16	7	20
	총계	20,719	2,460	4,150	317	3,361
2020학년도 (2020.3.1.~ 2021.2.28.)	초	1,193	49	269	12	197
	중	3,866	327	1,080	75	738
	고	2,302	233	774	20	483
	기타	43	6	12	0	15
	총계	7,404	615	2,135	107	1,433
2021학년도 (2021.3.1.~ 2022.2.28.)	초	2,554	131	488	43	311
	중	6,330	390	1,552	48	931
	고	3,324	280	899	25	558
	기타	48	5	12	4	14
	총계	12,256	806	2,951	120	1,814
2022학년도 1학기 (2022.3.1.~ 2022.8.31.)	초	1,505	39	227	38	150
	중	3,912	159	764	46	442
	고	1,730	122	464	9	297
	기타	25	2	9	1	10
	총계	7,172	322	1,464	94	899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1명의 가해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선도·교육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가 13,032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사과 11,561건, 학교봉사 8,090건, 출석정지 2,976건, 사회봉사 2,476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1,791건, 강제전학 999건, 학급교체 743건, 퇴학 53건의 순으로 많았다.

| 표 3 | 학년도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단위: 건)

기간	학교급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2018학년도 (2018.3.1.~ 2019.2.28.)	초	4,109	1,362	1,176	114	1,748	309	187	162	0
	중	11,743	8,840	6,536	2,299	6,827	3,293	547	1,238	1
	고	4,427	3,370	2,479	1,304	3,122	1,572	299	659	151
	기타	87	72	44	17	83	39	5	13	1
	총계	20,366	13,644	10,235	3,734	11,780	5,213	1,038	2,072	153
2019학년도 (2019.3.1.~ 2020.2.29.)	초	5,294	2,224	1,623	265	2,348	438	196	196	0
	중	11,474	9,222	5,853	2,100	7,492	3,324	614	1,205	0
	고	4,066	3,487	2,139	1,118	3,196	1,494	282	712	168
	기타	104	63	33	11	75	44	9	14	0
	총계	20,938	14,996	9,648	3,494	13,111	5,300	1,101	2,127	168
2020학년도 (2020.3.1.~ 2021.2.28.)	초	1,157	702	548	53	189	103	20	27	0
	중	3,419	4,153	2,392	691	843	1,234	154	413	0
	고	2,080	2,422	1,477	327	494	754	103	222	46
	기타	32	26	9	7	7	16	0	5	0
	총계	6,688	7,303	4,426	1,078	1,533	2,107	277	667	46
2021학년도 (2021.3.1.~ 2022.2.28.)	초	2,877	1,957	1,577	247	262	222	113	92	0
	중	5,919	7,407	4,488	1,487	1,024	1,709	427	541	0
	고	2,736	3,623	2,001	731	487	1,033	202	357	53
	기타	33	45	24	11	18	12	1	9	0
	총계	11,561	13,032	8,090	2,476	1,791	2,976	743	999	53
2022학년도 1학기 (2022.3.1.~ 2022.8.31.)	초	1,601	1,322	957	151	104	108	70	40	0
	중	3,330	4,453	2,724	1,008	323	898	248	239	0
	고	1,237	1,896	1,091	407	174	450	95	157	18
	기타	14	18	5	0	4	8	0	2	0
	총계	6,182	7,689	4,777	1,566	605	1,464	413	438	18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

2.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적 쟁송 현황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법적 쟁송으로 가는 경우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이 있다. 과거에 있었던 원처분에 대한 재심은 2020학년도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로 이관 및 재심 정비로 인해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2020학년도 이후의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및 인용, 각각의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표 4 참조).

표 4 | 학년도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및 집행정지 현황

(단위: 건, %)

대상	구분	연도	청구	진행중	취하	기각	인용	인용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인용률(%)
가해 학생	행정 심판	2020	480	17	46	332	85	17.7	273	162	59.3
		2021	751	22	70	550	109	14.5	441	220	49.9
		2022	889	160	70	555	104	11.7	504	264	52.4
	행정 소송	2020	111	11	25	62	13	11.7	73	49	67.1
		2021	211	41	36	107	27	12.8	112	69	61.6
		2022	265	156	36	60	13	4.9	145	87	60.0
피해 학생	행정 심판	2020	175	1	17	127	30	17.1	9	3	33.3
		2021	392	17	43	238	94	24.0	19	1	5.3
		2022	447	18	47	290	92	20.6	13	3	23.1
	행정 소송	2020	5	1	0	4	0	0	1	0	0
		2021	25	2	3	18	2	8.0	2	1	50.0
		2022	34	13	3	17	1	2.9	2	1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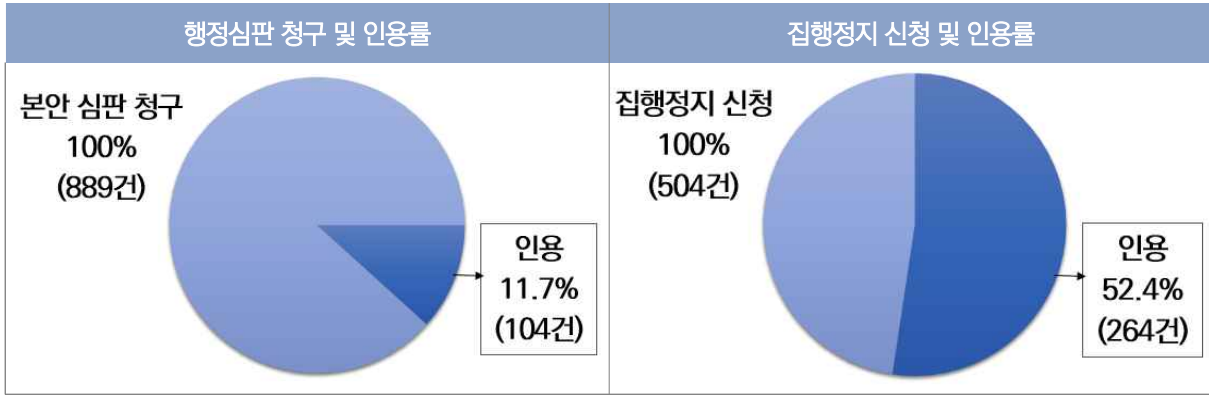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를 일부 재구성하여 제시함

먼저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0년 480건, 2021년 751건, 2022년 889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20년 17.7%, 2021년 14.5%, 2022년 11.7%로 나타났다. 본안 심판 청구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용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2020년 273건, 2021년 441건, 2022년 504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률은 2020년 59.3%, 2021년 49.9%, 2022년 52.4%로 약 1/2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 심판 인용률은 낮으나, 이에 비해 본안심판 집행정지 인용율은 매우 높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은 결과는 가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증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삶과 학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하다.

| 그림 2 | 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인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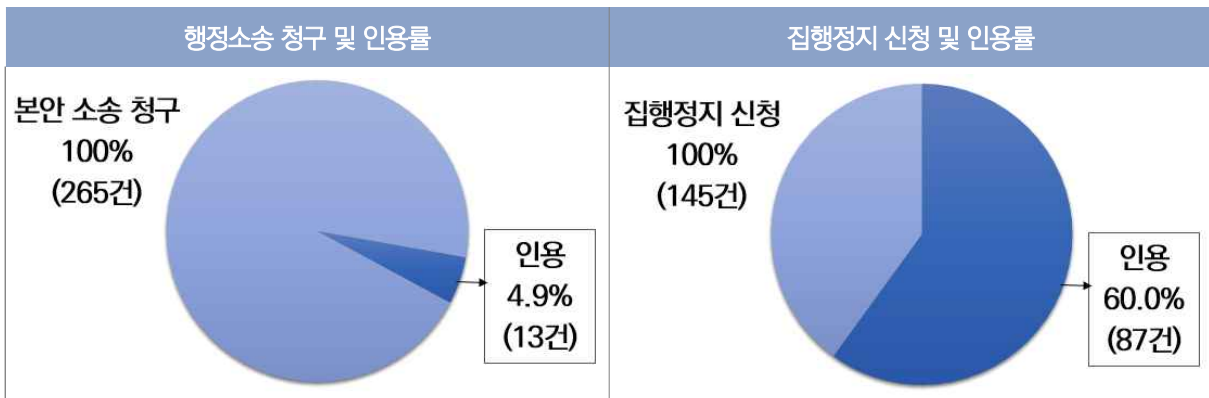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청구 건수는 2020년 111건, 2021년 211건, 2022년 265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인용률은 2020년 11.7%, 2021년 12.8%, 2022년 4.9%로 나타났다. 본안 소송 청구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2020년 73건, 2021년 112건, 2022년 145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2020년 67.1%, 2021년 61.6%, 2022년 60.0%로 모두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 소송 인용률은 낮으나, 이에 비해 본안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매우 높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은 결과 역시 가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삶과 학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하다.

| 그림 3 | 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청구 및 인용 현황



IV.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 법적 쟁송 남발과 장기화로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가해학생 분리 집행 지연

최근 한 법조인의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 행정심판 본안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본안 및 집행정지 등을 연이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학을 거부하며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대법원 판결 직전야야 타 시·도로 전학을 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따른 강제전학이 아닌 일반전학을 시도하기도 하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보장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법적 쟁송 권리와 학습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이에 피해학생은 고교 학업과 대학 진학은 물론이고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평생동안 안고 가야할 충격과 피해가 가늠조차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의 사건을 현재 학교폭력 현장에서의 특별한 사례로만 보기는 어렵다. 2022년에만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889건이며,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504건이다. 그리고 행정소송 건수는 265건이며,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145건이다. 이에 따라 법적 쟁송을 동원한 시간끌기로 인한 피해학생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행정심판 본안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본안 및 집행정지 건수가 모두 증가 추세이며, 여기에는 의도적인 시간끌기나 법적 쟁송 부추기기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해학생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율은 2020~2022년에 49.9%~59.3%이고, 가해학생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2020~2022년에 60.0%~6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관련 법적 쟁송 제도가 피해학생의 삶과 학습권 보장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2021년 행정소송 건에 대한 조치이행 완료 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인해 최대 23개월이 소요된 건이 1건이며 12~16개월이 소요된 건도 7건으로 조사되는 등 장기간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³⁾

피해학생이 오랜 기간 동안 폭력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하다가 2학년 때에 신고하면 고3이 되어 대학입시가 끝나고 나서야 소송이 끝날 수 있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의미이다. 그 사이에 가해 학생은 학업을 이수하며 대학에 진학하지만, 피해학생은 피해와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학업과 삶에 지장을 받고 대학 진학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 법원 등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해학생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없으며,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완화 및 실효성 약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라 함) 기재는 “학교폭력 가해를 한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도입 당시부터 가해학생에 대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며 헌법에 위반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2016. 4. 28. 선고 2012헌마630결정)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졸업시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지침이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가해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서울시특별시교육청, 「000국회의원 제출자료」, 202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제기된 기재 완화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을 졸업 후 5년(고등학생의 경우 10년)에서 고등학생도 5년으로 단축하고(2012년 6월 29일 훈령 개정), 2014년 1월 16일에 훈령을 개정하여 초·중·고교 모든 2년으로 단축하였다. 그리고 일부 경미한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졸업 후에 보존이 되는 조치에 대해서도 해당 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담기구의 심의가 요식행위에 그치며 가해학생의 반성과 피해학생의 회복·치유 등과 무관하여 삭제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최대 졸업 후 5년(고등학생의 경우 10년)까지 확대하여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육부도 지난 4월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에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확대”, “학교폭력(강제)전학 기록은 예외없이 4년 보존”,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필수”, “2026학년도 대입 정시 등 모든 입학전형에 반영 의무화”(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그림 4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현 행	개 선
1·2·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 원칙 :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6·7호	• 원칙 :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 원칙 : 졸업 후 <u>4년 보존</u> • 예외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8호	•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 졸업 후 예외없이 <u>4년 보존</u>
9호	• 영구보존(삭제 불가)	

※ 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자료: 교육부,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보도자료』, 2023.4.12.

3.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내·사회봉사 등의 분리·반성 효과 미흡

현행 제도는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학생 분리와 가해학생의 반성 및 성찰 등에 허점이 많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즉시분리 조치할 수 있으나, 현행 3일 이내로는 너무 짧고 휴일이 포함된 경우(예: 금요일 분리시 월요일 분리 해제)에 대한 고려도 없다. 이로 인해 약 3주의 사안조사 기간과 4주 이내의 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동안 적절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4항). 그러나 제7호 학급교체는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시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에도 제5호(특별교육 등)와 제6호(출석정지)는 포함되어 있으나, 학급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의 즉시분리를 위해 가해학생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시키는 등 가해학생 분리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접근 금지와는 달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대면하거나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동선 분리는 쉽지 않으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과 마주칠 경우 심리적 위축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교내봉사와 사회봉사가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반성 및 성찰의 선도·교육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해당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학교 수업과 학원 등 학업 이수를 이유로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교내봉사와 사회봉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학생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V. 가해학생 분리 등의 개선과제

1. 행정심판·행정소송 운영 개선 등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 단축

일부에서는 행정심판 결정기간이 길어지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이 경우 심판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⁴⁾ 그리고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해학생 측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진행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처분 이행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와 학업 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교육부에 제안하였다.⁵⁾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하는 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023.4.6.)이 발의되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을 통해 단축할 경우에는 헌법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울행정법원은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2월 20일부터 행정1단독·행정2단독·행정5단독 재판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은 종전까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담당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독재판부로 담당을 바꿨다는 설명이다.⁶⁾

그러므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충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도 서울행정법원의 사례와 같이

4) 장명선 외,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2019년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9, pp.481~482

5) 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제도 개선 제안」, 2023.3.23.

6) 황재하,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 『연합뉴스』, 2023.2.17.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조를 신설하여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 법원 등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해학생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학생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서면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교육장이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3.4.24.;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3.4.13.)이 발의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3.3.27.;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2023.3.9.)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서동용의원 대표발의, 2023.3.21.;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023.4.6.)도 발의되어 있다.

2. 학생부 기재 기간 확대 및 소송 종결 후 상급학교 입시 재반영

법적 쟁송 제도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렸거나, 가해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가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부는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 및 징계 처분 이행을 지연하는 데 법적 수단을 악용하는” 소위 ‘학교폭력 시간끌기 작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록을 늦추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 및 대학입시 반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2021년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조치이행 완료기간을 살펴보면, 12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 8건 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건씩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측이 조치 불복소송을 최대한 오랜 기간 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⁷⁾

이에 대해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확대하여 학교폭력(강제)전학 기록은 예외없이 졸업 후 4년간 보존하며, 학급교체와 출석정지 기록은 졸업 후 4년으로 확대하되 적절한 절차를 거쳐 기록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적절하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의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중대한 조치의 기록이 고등학교 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의 중대한 조치 기록이 대학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부 기재 내용 중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의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의 삭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 결과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확인 및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대책(2023.4.12.)에는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필수”가 포함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 동의를 받기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이 벌어지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의 명분을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⁸⁾ 이에 학교장과 전담기구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과 피해회복 정도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가해학생측에서 피해학생측에 대해 무분별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회복·치유 등과 무관하게 학생부 기재 내용이 삭제될 수 있도록 운영된 것이 문제였다. 향후 제도 개선 이후의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강제)전학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측의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결과, 피해학생측의 피해회복 정도 등의 확인을 전제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교육 현장의 실제적 변화와 국민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학생부 기재 내용 삭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입·고입 전형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적 쟁송 중인 지원자는 사전에 대학·고교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관련 소송 등 법적 쟁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고교는 입학 이후에라도 미 기재 등 허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관련 소송 종결 결과(결격사유 또는 감점)를 반영하여 입시 결과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입학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 및 고교 입학 이후에 입학취소가 될 경우에 가해학생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이 받는 피해는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삶 전체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7) 조희연, 「시간끌기 더 교묘해져... 기재기간 확대 등 사후조치 강화해야: 이덕남 대한교육법학회장 인터뷰」, 『세계일보』, 2023.3.19.

8) 이은심, 「학교폭력과 차별, 현주소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3.4.19.

일하거나 유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들 간에 법적 쟁송 제기 여부와 쟁송 기간, 대학·고교 입시 시점 등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자는 의미이며, 모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상급학교 진학에서 큰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자체가 갖는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의미도 있으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반성과 성찰 없이 용서해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필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을 개정하여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를 개정하여 피해학생의 요청 시 학교장이 일정기간 이내에 출석정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2023.4.12.)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며,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학급교체를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포함시키는 방안,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조치도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해학생 학급교체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3.4.12.)이 발의되어 있다. 가해학생 학급교체 긴급조치의 경우, 교육부는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도종환의원안(2023.4.12.)은 현행과 같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등을 개정하여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가해학생 학급교체와 일정 기간 이내의 출석정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요청 시에도 학교장이 일정 기간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와 가해학생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 분리를 위해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 중 제2호 조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의 접근 금지까지 포함하도록 하되 학교교육 활동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하거나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으나,⁹⁾ 접근 금지로 명시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교육 활동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피해학생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할 책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내봉사와 사회봉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라는 점을 용어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교내봉사 교육(조치)”, “사회봉사 교육(조치)”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특별 교육 조치 이행에 따른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특별 교육을 조치할 경우에 신속한 이행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수업과 학원 수강 등을 사유로 이행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앞에서 제시한 방안을 포함하여 교내봉사와 사회봉사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로서 스스로 성찰하고 피해학생 피해회복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3.10.; 이덕난, 유지연,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2021, pp.161~185.

참고문헌

- * 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제도 개선 제안」, 2023.3.23.
- *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2023.4.12.
- *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
-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3.1.
- * 서울특별시교육청, 「OOO국회의원 제출자료」, 2023.4.
- * 유지연, 이덕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1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4.8.
- *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0.
- *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2010년대 초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범정부적 실용적 대책 필요」,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토론회』, 배준영 국회의원, 2021.2.18.
- * 이덕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의 쟁점과 법적 과제 연구」, 『‘학교폭력과 차별, 현주소와 과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23.4.19.
- * 이덕난, 유지연,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2021.
- *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NARS 현안보고서』, 제10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12.24.
- *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35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1.5.
- *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3.10.
- * 이승현, 이덕난 외, 『현장중심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 * 이은심,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의 쟁점과 법적 과제 연구에 대한 토론문」, 『‘학교폭력과 차별, 현주소와 과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23.4.19.
- * 장명선 외,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2019년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9.
- * 조희연, 「시간끌기 더 교묘해져… 기재기간 확대 등 사후조치 강화해야: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인터뷰」, 『세계일보』, 2023.3.19.
- * 황재하,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 『연합뉴스』, 2023.2.17.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90호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2023.5.10.	허민숙
제289호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 편의점 유리벽의 '불투명 시트지' 논란을 중심으로 -	2023.5.8.	문심명
제288호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2023.5.2.	유영국
제287호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	2023.4.26.	김형진
제286호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3.3.31.	박소현
제285호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 검토	2023.3.30.	김광현
제284호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2023.2.24.	허민숙
제283호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	2023.1.25.	김도희
제282호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2023.1.16.	장경석 박인숙
제281호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현황과 향후 과제	2022.12.30.	배성희
제280호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2022.12.30.	황인욱
제279호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② -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2022.12.30.	김도희
제278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정책 개선 방안	2022.12.30.	이동영
제277호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22.12.30.	심성은
제276호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2.12.29.	경선주
제275호	국회 의사절차 개혁과 입법기간의 변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 비교	2022.12.29.	전진영
제274호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과제 - 에너지 정책 방향 검토와 에너지 산업 전망을 중심으로	2022.12.29.	이승만
제273호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2022.12.29.	박소현
제272호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2022.12.29.	이소영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71호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2022.12.28.	유재국
제270호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2022.12.27.	김형진
제269호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2.12.20.	임준배
제268호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2022.12.20.	배재현 이송림
제267호	독일연방기본법의 개정 사례와 시사점	2022.12.15.	김선화
제266호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하와이주(洲) 사례를 중심으로	2022.12.12.	박명희
제265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2022.11.28.	이덕난 유지연
제264호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2022.11.7.	윤성원
제263호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 국제공동연구 감소와 국제협력 총괄 규범 문제를 중심으로	2022.10.20.	권성훈
제262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2022.10.4.	김지민 배성희
제261호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2022.9.16.	배재현 김진수
제260호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2022.8.30.	이덕난
제259호	독일 중진협회의 구성 및 운영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2022.8.19.	전진영
제258호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	2022.8.16.	심성은
제257호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2022.7.25.	유영국
제256호	2022년 프랑스 총선 정당체계의 재편과 국정운영 변화 전망	2022.7.22.	오창룡
제255호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2022.7.20.	이재영
제254호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2.7.6.	정준화 박소영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53호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2.6.14.	허라운 박인환
제252호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	2022.6.2.	류호연 이수환
제251호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2022.5.19.	허민숙
제250호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과제	2022.5.18.	조인식
제249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2022.5.12.	임재범
제248호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	2022.5.3.	김규호
제247호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2022.4.28.	이덕난 유지연
제246호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2022.4.6.	김주경 김경민
제245호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	2022.3.10.	허민숙
제244호	미일안보협력 사례로 본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2022.3.8.	김도희
제243호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	2022.2.28.	김선화 박혜림
제242호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2022.2.22.	허민숙
제241호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2022.1.28.	허민숙
제240호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2022.1.13.	김진수
제239호	영국과 일본의 법안사전심사제 현황과 시사점	2021.12.31.	최정인 김유정
제238호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	2021.12.31.	박재영
제237호	디지털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2021.12.31.	최정민
제236호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①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개관	2021.12.31.	김도희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35호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12.30.	조인식
제234호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2021.12.30.	임재범
제23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1.12.30.	한경석 한인상
제232호	과학기술분야 계획조정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2021.12.29.	권성훈 김나정
제231호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2021.12.28.	전윤정
제230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	2021.12.23.	김도희
제229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021.12.22.	류영아
제228호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2021.12.21.	김광현
제227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2021.12.15.	이재영
제226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2021.12.13.	문심명
제225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021.12.10.	하혜영
제224호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2021.11.24.	김선화
제223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2021.11.18.	허민숙
제222호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1.11.17.	박선권
제221호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11.16.	박상윤
제220호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2021.11.10.	김진태
제219호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소방안전 강화방안	2021.11.08.	배재현 김예성
제218호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21.11.03.	황인욱
제217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2021.11.2.	박진우



NARS 현안분석 제291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35040-001620-14
ISSN 2586-565X

